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864

제출년월일: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·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의 임기가 없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

- 안건 발생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 · 운영, 심의 · 의결 후 자동 해산
- 나.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책 기획관으로 하향하고, 위원 자격 규정을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'23.4.13.~5.3.) 결과 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정상영(☎2133-6732)

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획조정실장이 되고"를 "정책기획관이 맡고"로, "자가 된다"를 "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햀 개 정 안 제9조(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제9조(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생 략)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 ④ ----- 정책기획관이 맡고-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람 된다.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1. 책임운영기관 감독부서의 본 1. 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 부장・국장 및 정책기획관 급 이상 공무원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3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 산한다. ⑥ ~ ⑦ (생 략) ⑥ ~ ⑦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-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의 자격 규정 정비는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 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정상영 (☎ 2133-6732)